

투자권유준칙

Investment Recommendation Guidelines

자본시장법 제50조 · 금융소비자보호법

릿지자산운용 주식회사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및 직접판매업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시행령·시행규칙·금융투자업규정·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한국거래소의 규정 등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①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집합투자증권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71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및 법 제5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투자광고는 투자권유로 보지 아니한다.
- ② “전문투자자”란 전문성 구비여부,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법 제9조제5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③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 이외의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해당 투자자를 일반투자자로 본다.

제3조(투자권유의 원칙)

① 투자자 보호와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2.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3. 투자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한다.

②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며, 이해상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투자자가 이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4조(투자자의 구분)

- ① 투자권유담당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투자권유담당자는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5조(영위업무의 범위)

- ① 회사는 금융위원회의 등록조건에 따라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에 한하여 영위하여야 하며, 다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 및 다른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제2조제2호의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권유할 수 있으며 제2조제3호의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한다.
- ③ 회사는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제2조제3호의 일반투자자와는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 ④ 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하지 아니한다.
- ⑤ 회사가 제2항 내지 제4항에 불구하고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준칙을 관계법령등의 내용에 적합하고 일반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미리 개정한 후에 그 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제6조(투자권유 시 유의사항)

- ① 투자권유담당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3.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 가.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나.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다.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4.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의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② 투자권유담당자는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 ③ 투자권유담당자는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제7조(설명의무)

- ① 투자권유담당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② 투자권유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경험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 투자자의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③ 투자권유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투자권유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1. 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2.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판매 전에 교부하는 경우
- ⑤ 투자권유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투자권유담당자는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8조(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① 투자권유담당자는 투자자에게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2.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3.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목표 환위험 헤지 비율
4.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5.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 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② 투자권유담당자는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예상수익률의 보장, 예상수익률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투자권유담당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10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에 대한 특칙)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4.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9.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10.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11.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12.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의 각 호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투자일임재산이 위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제11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 위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